

제438회 국회
(임시회)정무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24일(월)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2
 - 소위원장(강준현) 인사 2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우 전문위원님.

류승우 전문위원님.

조만수 행정실장님.

최선웅 보훈정책조사관님.

윤상우 금융정책조사관님.

백수연 금융정책조사관님.

김준기 보훈정책조사관님.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조사관님들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최기상 위원님에서 강준현 위원님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강준현) 인사

○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강준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내일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내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야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산결산 심사하는 데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시14분)

○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등 총 87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5억 원을 수납하고 3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9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3092억 원에 제2차 추경 836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원을 더한 6조 4035억 원 중 6조 3845억 원을 집행하고 114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특별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차량 충전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900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122억 원 중 116억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익금 등 3053억 원입니다.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3053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11억 원입니다.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181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자산은 3조 1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8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과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7900만 원이며 출연금·보조금의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714억 80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억 5400만 원과 예비비 6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72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97.5%인 655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3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항상 저희 총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539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3779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3636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6.2%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4482억 6100만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 1680억 4600만 원, 집행정지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액이 1876억 22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9.3%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경영난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 채납액은 92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633억 7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9900만 원과 예비비 7억 3000만 원을 더한 1642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160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 7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 급증에 따른 상담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7억 30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해당 용도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자산은 1900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보다 과징금 징수결정액과 관련된 미수채권이 955억 96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156억 85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 수입·지출,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 2256억 원 중 1251억 원을 수납하였고 1005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340억 원, 폐업 등 납부능력 부족 535억 원, 징수유예 130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조 6707억 원으로 5조 6688억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조 950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491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9조 381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보증료 환급,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구상채권 회수 등으로 2조 2376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구상권회수금 등으로 5조 173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보유주식 매각금액과 법정부담금 등으로 3조 4343억 원을 조달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 자산은 38조 2493억 원이며 부채는 20조 73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업무에 항상 관심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역원 금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1200만 원이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등 총 14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83억 2600만 원이며 인건비 505억 1400만 원, 기본경비 77억 9800만 원, 사업비 460억 2100만 원 등 총 1043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비용 등을 위해 총 1억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2034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999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1972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8.7%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34억 2200만 원으로 법인청산종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49억 3000만 원, 기본경비로 19억 9200만 원, 사업경비로 48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65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자산은 180억 7500만 원으로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9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5900만 원으로 기타충당부채인 소송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표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표 2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1번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은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감액 조정된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에 다른 세부 사업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쪽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4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진흥원의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유보되어 있었음에도 2025년 추가 출연금을 교부함에 따라 2544억 원의 출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국고 사전 반납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번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사업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 대기업에 저리 대출의 승인이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업의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와 우대금리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12번 한국

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추경 편성 당시 매입 계획 대비 매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잔여 대상 채권을 신속히 매입하여 당초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업 중 4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적도 일부 기관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기관과 결합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동수 박현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6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 16개 사업 중 7번,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이 2년 연속 절반 이상 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수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홍보수단과 매체, 홍보시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번,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사업의 예산을 전용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전 기술·보안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총괄표 7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총 13개 사업 중 1번, 징계처분 관련 인사·보수 운영 기준입니다.

일부 연구기관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되는 기간에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동수 구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승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표 8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총 30개 사업에서 32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1번, 세입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5년 수납률이 45.1%에 불과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함에도 세입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납액 규모와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서 7번,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대상자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 예산의 약 20%를 초과 집행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과소 편성하는 경우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번,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진료 인원 및 진료 단가를 과소 추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1138억 18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보훈공단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계의 정확도를 재고하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12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3번,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 용역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매년 선정되는 게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동수 류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가지고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 전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마포갑 조정훈입니다.

유동수 위원장님, 저는 지난 전체회의 때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유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최초의 회의가 언제였으며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였고 또 최초 안건을 제기한 기관이 대통령정책실인지 금융위원회인지 또 제3의 기관인지 제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답변이 왔는데 ‘금융위 정례회의 시 사전 보고했다’, 날짜는 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보도자료 낸 지 이틀 전에 사전 보고한 게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처음 논의한 회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애꿎은 사무관까지 불러서 추궁하고 싶진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장님, 정말로 이건 중요한 정책적 실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이 요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경유에 관한 최초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공식 안건 그리고 회의자료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이역원 위원장님,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상세한 자료, 지금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위들 또 처음에 회의 제안한 부서 이런 내용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역원 저희들이 몇 차례 자료제출 요구도 받고 그다음에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자료를 좀 더 잘 살펴보고 조정훈 위원님께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유동수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섭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저번에 부동산감독추진단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용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이것 옥상옥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국무조정실장님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회의록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회의록은커녕 이미 제가 확인했던 보도자료 이외에는 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날의 안건의 요약본 정도를 받았는데 그건 사실 보도자료랑 내용이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회의록이 없어도 문제인 거고요. 있다면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직접 회의록을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자료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다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 혹시 청와대의 지시나 주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냐고 여쭙봤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손실 규모라든지 위험의 전파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시를 하지 않았더라는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이것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건 저한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일단 지금 박성훈 위원님 지적하신 ETF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박성훈 위원님께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경인사연의 이한주 이사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사연 정년 규정이 모두 직급 60세로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60세로 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경인사연의 인사관리규칙에, 표준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2013년도 1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동안 경인사연의 정년 규정이 직급에 따라서 60세, 57세, 58세 등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치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경인사연에 소속돼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26개지 않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김현정 위원 그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의 노사 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KDI 있지 않습니까. KDI가 현재 정년이 60.99세입니다. 60세로 일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60.99세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연장해서 61.99세로 하자라는 논의가 거의 합의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데 지금 경인사연의 표준지침 때문에 그것을 노사 간 합의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게 현재 정년 연장에 관한 이슈가 핫이슈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 취지들 그리고 또 노사 간의 이런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청년 채용 축소 이런 것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의 비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도 더 강화시키고 명예퇴직제도 확대하고 선채용 등 보완 방법도 노사 간에 거의 합의 직전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준지침을 고령자고용법에 맞춰서 지금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관마다 속성들이 좀 다르고 또 노사 간에 이야기하는 정도도 좀 다르기 일단은 저희가 산하기관 26개 기관 전체로부터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의원실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예,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금융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실기업 코스닥 퇴출 이게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동전주라든지 시총 기준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신속히 퇴출하고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김현정 위원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시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표 보시면 7월 달부터 시총 200억으로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을 당겨서 조기 실행하고 있고 또 28년 1월에 300억으로 될 것도 내년 1월로 당겨서 조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1년 만에 모두 적용하는,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시총 기준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저기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흑자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표를 보시면 26년 7월 말 기준으로 시총 200억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에 흑자 기업도 마흔다섯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총 미달로 지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에스앤더블류라고 있는데—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요—저기 당기순이익이 36억을 기록한 흑자 기업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시총 기준으로 이것을 퇴출 대상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보완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평균 시총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기업의 다산다사 원칙은 유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상장 폐지 부분은 코스닥 기업을, 코스닥 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 그다음에 또 이미 저희들이 7월 1일 날 시행한다고 발표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책 신뢰성 이런 걸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정상화가 계속 정비보다 쉽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정부의 부동산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연속해서 몇 주째 상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0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과 말뿐인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시장이 정책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을 정부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정부의 오만이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을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는 정상이고 비거주는 투기라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시장을 재단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집 한 채 가진 국민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면 갑자기 투기꾼이 됩니까? 주소지가 납세자의 도덕성을 결정합니까? 국민이 생활 필요에 따라서 주거지를 옮기는 그 인원이 연간 약 6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자처럼, 투기수요처럼 지급하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실장님, 이러한 정책을 하기 전에 비거주 1주택 세제 강화로 과연 얼마나 실거주 전환이 늘고 임대 매물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책 효과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예상되는 전세매물 감소량이라든지 전세가격 상승 영향, 어떠한 자료도 지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면서 이러한 전형적인 정책 역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황당한 대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저거 한번 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용산국가공원 시민에게 완전 개방 추진. 서울시민의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성입니다. 기지 반환 그리고 토지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졸속이 곧 탁상행정이라는 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여당의 용산공원 공급 부지와 대상에 대해서 매일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법적 문제도 검토해야겠지만 국회, 서울시, 용산구, 게다가 미군까지 협의를 거쳐야 하지요. 그냥 무턱대고 발표부터 해놓고 어디에 지을지 이제부터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무대책식 정책 발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국조실 정책 조율 실패 아닙니까?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요. 지난 2007년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의 책무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철학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지요.

문제는 이러한 오염 정화 작업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캠프킴 부지라고 아시지요? 2020

년에 주택 공급지로 발표가 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
다. 반환 9년 후인 2029년 정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규모도 크고
미군과의 반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용산공원 본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는 것입니까? 지금 유치원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과연 입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
확실한 그런 정책을 막 던지는 게 국민의 정부가 할 일입니까?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부가 제대로 추산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토양오염 정도, 예상 정화 기간, 정화 비용을 산출한 자료가 있
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 단위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 그리고 정밀한 시뮬레이
션이나 사전 검토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 부지나 국회의사당 부지를 차라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라는 그런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수 예.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착공이나 준공 물량, 22
년부터 24년 동안에 많이 착공이 안 돼서 준공 물량이 적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자본시장도 활성화되고 수요 측 압력이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그
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과세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관련해서는 최대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금융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 실수요자 금융
그리고 공급하고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늘려 가고 있고요.

용산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거나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용산공원의 면적이 지금 상당히 넓
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높은 공간, 이왕이면 미래세대까지 같이 감
안한 공간활용 계획들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지금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시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정부하고 LH, SH, 온 국민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여기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고맙게 듣고 정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다음 주면 홈플러스 관련된 절차들이 최종 결정되는 중요한 주여서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 2차 수정회생계획안이 송달됐고 다음 주 9월 2일 관계인집회 그리고 9월 4일 날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렵게 여기까지 왔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과 또 홈플러스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정상화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입점업체들 그리고 납품업체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과 가정이 홈플러스 정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는 금융위원장님께 공익채권자 보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익채권자라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상 180조에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정황, 이처럼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상대적 우선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2차 수정회생계획서에서 메리츠는 약 1조 2000억원, 법에 보장되어 있는 선순위 신탁담보채권을 28년 2월까지 사실상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7900억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거래의 공익채권, 즉 납품업체들의 채권들이지요. 이걸 같은 기간, 즉 28년 2월까지 0.5%, 규모로 따지면 약 4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납품업체들에, 공익채권들에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긴 하던데 이게 28년 2월까지의 공익채권 변제 계획상 0.5% 그리고 1년 뒤인 29년 2월까지가 20.3%, 마지막 1년, 30년 2월까지가 79.2%라는 다소 실행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홈플러스를…… 저희 관악구에도 남현 지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자주 방문해서 물건도 사고 힘을 실어 주고 있긴 한데 정상적 운영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회생에 맞춰서, 운영 자금을 써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상 메리츠가 갖고 있는 우선변제 담보권을 저희가 인정하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법원 절차로 넘어갔지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정성, 상생을 위한 아이디어나 또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말씀 주신 대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이런 공익채권 같은 경우는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현행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아무래도 당사자 간 의사조율이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겨 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상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있고 메리츠증권도 수탁받은 자금을 운용해서 개인,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는 사실은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라는 유통업체, 이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무리한 차입으로 인한 부실로 가는 과정들 또 몇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었

지만 현재 어렵사리 정부와 정치권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살려 보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 자금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납품업체들이 중소기업도 많고 규모도 큼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입점 점주들도 중요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실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을의 위치에 있었던 납품업체들의 정말 상황이 걸린 이 과정 속에서 금융당국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박민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9월 2일 관계인집회가 잘 통과되고 그다음에 9월 4일 날 법원에서 회생계획 승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날인데 결산심사할 때마다 정부가 주어진 예산 제대로 다 썼는지, 불용한 거 없는지, 이용한 거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주어진 예산 다 쓰면 우리 사업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책이 국민께 어떤 의미로 남았는가를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상에 있는 소소한 지적사항들은 제가 서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출 드리구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간단하게 좀 여쭙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저희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야 되겠다, 서민주거를 안정화해야 되겠다,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박준태 위원** 정상화, 안정화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정책방향과 그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상화하고 제대로 부동산 운영되게 그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부동산 가격이 운용되게 하려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세 가지 방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

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다면 하더라도 7년 뒤, 10년 뒤에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 이 부동산가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 완화하고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조정해야 되는 게 국무조정실 역할이에요. 국무조정실 뭐 하는 데 입니까? 규제 해소하고 부처 간 이견 있으면 조율하는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규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온갖 명목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다 중복되면서도 또 추가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금융규제, 대출규제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규제를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해하고 부동산거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지도에 더 이상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지역은 전부 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놔 가지고 서울 살려면 그냥 이 규제 다 받는 겁니다,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부처 간에 중복되는 규제 조정하는 게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최근에 세제개편안 발표했을 때까지도 제가 특별한 역할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랬지요. 구윤철 기재부장관한테 ‘세금 바꾸면 욕 먹으니까 기어다니라’ 이렇게 했는데 국무조정실 제대로 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구윤철 장관이 기어다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무조정실은 거의 포복으로 다니셔야 돼요, 낮은 포복으로.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박준태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되면 서울처럼 국민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결국 세금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떠나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집 영원히 못 사게 되는 거고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서민들도 세월에 밀려 가지고 서울 밖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 정부 이대로 계속되면 진짜 서울이 돈 있는 사람, 특권층만 살 수 있는 북한의 평양처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말씀, 답변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박준태 위원님이 계신 문제의식하고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권층만 사는 서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100%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크게 보면 공급 잘하는 것, 두 번째로는 투기수요 억제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항목

은 이번 정부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고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인 결론 그 리고 박준태 위원님이 주신 우려까지 포함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국민성장펀드 7월 말까지 16.1조 원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 수도권에 40% 이상 승인하겠다는 목표도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니까요.

○박홍배 위원 금액이 궁금해서 제가 여쭙보는 건데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 하지 못하시면 이것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가 실제 승인 실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집행이 적기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잘 챙겨 주시고, 결국에는 과연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을,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인보다도. 더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사항이다 이 부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년미래적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청년도약계좌로 판매가 됐었고 올해부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만기와 한도는 조금 줄어들었고 정부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우대형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얻었지요. 그래서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는 경로들도 만들었습니다. 정부기여금이 월 납입액의 12%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관심들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과정에서 무려 2만 4300명의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박홍배 위원 2만 명이 우대형으로 통보받았는데 일반형으로 정정이 됐고 4300명은 일반형으로 통보받았는데 우대형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아예 가입대상이 아닌데 우대형이나 일반으로 통보받은 분도 마흔다섯 분과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발견 과정을 보니까 7월 24일 날 심사결과가 이미 통보됐고요. 그리고 27일 날 콜센터에 상담이 들어왔는데 아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대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형으로 통보가 오자 ‘내가 확실하게 중소기업 이런 요건에 다 해당이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아마 상담을 하다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7월 29일 날 전체 규모를 파악해서 31일부터 고객들에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융위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 확인하기 위해서 중기부·KoDATA·고용부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이 돼서 심사 오류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애

기를 해요.

어디서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누락됐다, 이 사항 혹시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뒤에 전요섭 금정국장님이나 손주형 기획조정관님, 내용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게 중소기업이나 아니냐를 보는데 거기서 빠져야 될 부분이 비영리기관, 국가나 공공기관, 그분들 같은 경우 아마 사이즈,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잘못된 부분 같은데, 하여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재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요. 이게 단순히 심사결과 통보를 받아서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에 그치지 않고 착오 안내 받으신 무려 4000여 명의 청년들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미 전환을 하셨고 3000명은 우대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후에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융위·서금원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이익 없도록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9월에 추가로 신청받을 추가 가입 운영기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로직 수정하겠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 상품에만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금융의 또 다른 상품들을 향후에 정부가 준비를 했을 때도 이렇게 검증절차 없이 상품이 급히 출시되고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지금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크게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를 너무 많이 떨어트리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2만여 명의 오류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심사 그리고 이후의 국회 결과 보고, 프로세스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금융위에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가입유형이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변경된 정정 통보자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까지 완료한 인원이 약 3000명이다, 7월 31일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 3000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01명부터 3499명 사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있지 않나요? 7월 31일 기준이면 이미 끝났잖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송언석 위원** 몇 명이에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3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3300명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 숫자잖아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

올 텐데 7월 31일까지 했으면 그게 몇 명인지 안 나오니까?

아까 전화로 확인하니까 8월 7일 기준 3579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오셨어요? 담당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지? 이거 숫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제가 3579명이란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리고 금융위 자료를 보니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8월 10일에서 8월 21일 동안 희망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신청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숫자도 모르시나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21일까지니까요……

○송언석 위원 8월 21일이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21일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 보고가 안 됐나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마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송언석 위원 그런데 금융위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데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청년도약계좌 당초에 예정했던, 계획했던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해 준다는 뜻인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정확하게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뭐예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도약계좌를 해약했기 때문에 해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려면 다시 가입한 상태로 돌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원상복귀로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부가 안내했던 것을 믿고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당초에 자기가 원했던 그대로 다시 해 준다는 얘기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해약을 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바꿔 댔는데, 그게 더 유리할 줄 알고 바꿔 타셨는데 그게 유리하지 않으시면……

○송언석 위원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없애 버렸잖아요. 없애 버리고 청년적금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거기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쪽 끝까지, 만기까지 가시는 거고요.

○송언석 위원 청년미래적금이고, 위원장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청년도약계좌가 말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32년 6월까지 10년간 하려고 했다가 2025년 12월 조기

종료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도 한 23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으시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송언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기 종료는…… 그러면 종료는 아닌 거네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조기 종료했다는 자료는 왜 제출하신 거예요, 금융위에서 준 자료 가지고 작성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가입하는 것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기존에 이미 가입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10년간 계속 그 혜택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약계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는 미래적금으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도약계좌를 다 해 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3579명 중에서 다시 원복을 신청한 사람들이 생긴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가서 설명도 했고요, 청년들 만났고요, 청년들이 다 알고 있고요. 2개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청년들이 다 계산을 해 봅니다.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님, 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거기에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송언석 위원** 자문위원회 지금까지 회의를 몇 차례 했는지 아세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자문위원회 정확히 회의를……

○**송언석 위원** 27번을 했는데 그중에 14번에 걸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차 회의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저희 자문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나머지도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창구들을 종합했고 그리고 또 기본원칙이 뭔가에 대한 속고 이런 걸 거쳐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 말고도 다른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26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의 자문위원 수당을 다 썼는데, 그것 뭐 하려고 돈을 들여 가면서 정부에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둬니

까, 그냥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의견 수렴하면 끝나는 것을?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이 사안이……

○송언석 위원 이 1억 3000만 원 잘못 집행한 것 같은데 이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다시 환수할 생각이 없으세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이 사안이 형사사범 체계의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제도 개편이어서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언석 위원 1억 3000만 원 환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해 안 되는데.

○위원장 유동수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문제되는 사례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프리미엄 써 있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보, 그 다음에 저기 플래티넘 써 있는 것은 건강검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다 포함된 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요, 최대 약 20만 원 선까지.

다음이요.

제공되는 형태가 또 매우 허술한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카카오톡 알림톡 이런 것 굉장히 유출이나 노출이 위험한 그런 형태로, 보안상 조치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정보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다 경험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자꾸 개인정보 동의해라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대부분은 ‘마케팅 또는 광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내가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사실은 토스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있잖아요. 신용정보법상 거래가 가능한 사업사이기는 한데 보험사에다가 거의 80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6만 9000원에 팔아 가지고 약 3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 이게 사전에 고지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약간만 고치는 걸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판매한다는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롯데홈쇼핑

에서도 개인정보를 팔아 가지고 약 37억을 벌었는데 과징금 1.8억 맞고 말았습니다.

다음이요.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에서는 맨 위에 가장 잘 보이게 ‘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마라’ 이런 링크가 의무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유럽에서도 이런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동의 문구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목적 외에는 절대 이용될 수 없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애매하고 상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실 나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일단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법한 동의…… 지금 수집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 법에서. 그런데 이것을 제3자에게 판매 여부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전에 나는 동의를 거부한다 하면, 거부하면 못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개인정보가 유상으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또 최근에 보험대리업에서 DB 업자들로부터 유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문제사항들을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개인에게 동의를 받을 때도 이렇게 유상 판매를 한다는 것들부터 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개보법상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런 문제 있는 사안에서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사항을 잘 들여다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신용정보법상에도 가명 정보는 판매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 데이터,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신용정보법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구을의 신동욱입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ChatGPT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 저의 모든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들어가고 있고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될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내 직업이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

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런 AI 업체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속 기술 발전의 정도나 지금 현재 기술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계속 그걸 업데이트 좀 하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인터넷 웹을 사용할 때는 그때만 한정해서 사용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학습을 해서 계속 진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입력한 정보를 이 필요에 의해서만 쓰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이것을 계속 축적을 하고 이 부분들이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개인정보가 거의 공유되는 현상 또 기업의 입장에서든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을 넣었는데 그게 그냥 바로 유출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회도 노력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개보위에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 포괄적이지만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지금 특히나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개보위도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뭐 법안 같은 것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지금 에이전틱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좀 내놓을 생각이 고요. 앞으로 AI를 쓰면서 보다 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입법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차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좀 정부도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 용산 문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어서 제 느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다 정부가 수용해서 거기에 15평짜리 청년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불가능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산공원이 비록 지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빈 땅이기는 합니까만 정부가 거기에 다가 전체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원을 짓는 문제와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정부가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서 정치적 논란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진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값으로 따지면. 그게 런던의 중심,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이런 것처럼 가장……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의 고층 아파트들 아시겠습니까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하는 아파트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산에 청년을 위해서 그럴 듯한 얘기를 가지고, 달콤한 얘기로 용산 부지까지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아파트 지어 주겠다는 얘기가 달콤하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혀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 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말로는 달콤하지만……

그런데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말하자면 일종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용산 시민공원에 아파트 짓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것?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용산공원 문제하고 관련해서 무슨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느냐는 말씀은 신 위원님 진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아시는 것처럼……

○신동욱 위원 아니, 제 질의의 의도를 하지는 마시고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아시는 것처럼 용산공원이라는 게 사실은 여의도공원보다 크고 올림픽공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 공공자산의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아니, 땅이 넓으면 거기다 무조건 아파트 짓습니까? 땅이 넓으면……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그래서 이것을 만족도 높은 공간, 이왕이면 미래세대의 걱정과 근심도 같이 반영된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신동욱 위원 저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얘기를 가지고 괜한 정치적 논란 불러일으키고, 본인들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싼 게 용산에 아파트 못 지어 가지고 비쌌습니까? 그것 국조실장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해법이 됩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가을 내내, 귀중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해야 될 시간에…… 지금 전부 기사들 보세요.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그것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이억원 위원장님, 최근 특히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참여시켜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증권, 스테이블코인 5개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화시켰거든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의 상장도 이미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 비증권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하는 데까지, 불집행 입장까지 다 내놨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유명한 블랙록, JP모건, 비자 다 그런

데요. 블랙록이 유럽 기관용 머니마켓 펀드에서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이미 도입했고, JP모건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JPM코인—그러니까 예금 기반 코인이지요—제공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 처리 규모가 누적 3조 달러 넘어섰고 하루 평균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결제한 게 연 환산 70억 달러 이미 돌파했어요.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히 코인 거래를 넘어서는 완전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벌써, 우리 당도 그렇고 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벌써 발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2단계 입법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데 정부안 언제 마련 됩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더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속도를 내는 건 다 좋은데 해 넘기면 안 되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그럼요.

○**이강일 위원** 그렇지요? 이번 가을에는 어떻게 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낼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가 지금 먼저 견인하고 있는데 정부도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강일 위원**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저희가 드디어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 에 시행령 나온 거 보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되게 제가 믿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배신당한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 듣고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강일 위원** 이걸 수정 정도가 아닌데? 이거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넘는 30명 최소 하한선, 이거 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법에 비율만 명시했지 우리가 이런 사안을 만들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특히 30에서부터 300개까지 가맹점의 비중이 꽤 높고 거기서 상당히…… 너무 과도한 비율인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새로 돼 가지고 제가 기대가 엄청 큼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180일 제한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악용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안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1000명 요건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1000명 요건 하게 되면 대형 브랜드 다섯 업체밖에 포획이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상한입니다, 상한. 1000명 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강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맞추려면 어차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너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상한을 낮추자는 의견이세요?

○이강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한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제약, 때려잡으려고 입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넷째, 가맹 거래사들 등 전문가 조력을 차단하는 적법한 대리권 조항 이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것도 악용되지 않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거는 이게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분쟁 32건 중에 단 1건만 대화하고 31건이 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가 중재해서 한 거는요 거의 50%가 협상을 해서 서로 만족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협상을 해서 가맹본부가 안 들어 줘도 할 말은 없지만 협상 자체를 하자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상 자체로도 갑과 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법을 입법을 했던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 취지에 충분히 맞도록 시행령도 다 뜯어고쳐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저희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이강일 위원 시간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강일 위원님 5초를 절약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이것 약간 제 추가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이강일 위원 예.

○위원장 유동수 예.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가맹사업이 보니까 저희 중소기업·대기업 생태계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생태계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거대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그쪽에 집중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영세 가맹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협상권을 좀 요건을 강화해서 처음에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개에서 300개 그 사이는 저희가 과도하게 강화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동수** 5초 마저 쓰시면 5초가 아니라 5초를 쓰고 계시네.

○**이강일 위원** 사실은 이 법은요 갑과 을이 상생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사업체를 키워 나가서 갑과 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 프랜차이즈에는 조금 그 요건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수의 단체가 형성되지 않아도, 서로 협상을 통해서 상생하는 구조가 영세할수록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단체 요건을 강화시킨 게, 강하게 좀 설정을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 일정 구간, 30에서 300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하여간 가맹사업법은 누구 때려잡자는 게 아니고 상생이니까 작든 크든 간에 협의가 요청이 되면 서로 상생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래서 상생 쪽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분 이상 기다리셨는데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난 7월 29일 날 처음 뵈었을 때 위원장님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라는 발언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6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 소신이 별로 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난 8월 13일 그 회의 이후에 올해 대출 총량을 1.5% 올려서 30조 원 더 늘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동기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신 건지, 그 변화 자체는 저는 지지를 합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년으로 상징되는 주택약자들에게는 저는 국무조정실장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 180도 바뀌어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금융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사례를 한두 개 들면 전세대출 하는데 추진하는 방안 발표하신 거 보면 이제는 전입신고까지 확인하신다고 하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지 증명해야 되고 또 전세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좀 화가 나요, 이거는. 4억 원 이하의 빌라와 비아파트입니다. 이 대출의 이름은 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게 청년의 보금자리에는 아파트는 없습니까? 무슨 이따위 상품을 만들고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데 아파트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청년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발언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아침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2%,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뼈 아픈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고 무게추만 있는데 그 무게추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현실적인 연속적인 발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우리 청년들이 거칠게 저한테 항의한 게 고시원에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넣게 했던 욕조 있는 고시원 얘기, 저는 이 취지야 어떻든 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욕조를 넣어 줄게’ 해 가지고 이제 고시원도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집 살 생각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해 봤자 빌라밖에 못 산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는 최소한 모르는가,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고시원에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넣어 주겠으니 박수쳐 달라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이것을 발표까지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폐버스야 뭐 한 번의 에피소드라고 쳐도 민감하고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청년 정서를 또 한 번 건드셨어요. 이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 공약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신속하게 하겠다. 대출규제 완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세금 늘렸지요. 공급대책 없지요. 재개발·재건축 이제 공급 효과마저 제한적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공약하고 정반대의 정책만 계속 발표해서서 지지율 떨어뜨리시고 청년과 주택약자들이 지금 울분·분노하게 하시고 또 금융이라는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은 일괄적으로 청년들한테, 주택약자들한테 혜택이 가장 많이 가야 될 금융서비스조차 이렇게 제한하시고, 금액도 제한하고 아파트도 못 사게 하고.

누가 그랬나요, 금융위 부위원장인가요?

그 슬라이드 한번 열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에 권대영 부위원장이시지요? 하신 말씀입니다. 빗투도 레버리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중, 적정 수준에서 투자하자. 그러면 빗내서 투자하는 건 영웅이고 빗내서 집 사면 죄인입니까? 금융을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 약자라는 표현과 청년에 대한 애정에 대해……

○조정훈 위원 주택약자.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결혼 페널티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신규 상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 청년을 우대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청년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있는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이번에 세제 발표한 게 세금을 줄인 거라고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세금하고 관련해서도 세금이 줄어드는 포인트도 있고요. 일부 과세 정상화가 가미된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정상화라는 큰 틀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급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한 정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재건축하고 관련해서도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저희가 이주비 대출하고 관련된 것을 늘린달지 아니면 재개발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낮춘달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영을 했고요.

물론 용적률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위원님,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제가 말씀드린 건 강조점인데요. 투기 수요나 과도한 부동산 쏠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 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쏠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자 그런 측면

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기구도 그렇고 전문가들 보면 한국 경제의 가장 잠재력 리스크로 항상 넘버원으로 뽑는 게 과도한 가계부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가계부채들을 과연 어떻게 적정하게 연착륙하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서 보다 더 한국 경제가 좋은 쪽으로 나가게,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제대로 된 역할이 되어야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아예 금융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투기적인 측면 이런 거, 비생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겠다 그런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주택공급은 촉진하는 금융을 하겠다. 그렇지만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 그렇지만 실수요는 편셋 지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말씀하신 청년들의 우려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청년들 지원 대책을 없애고 새로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규제를 해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모기지론,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이런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 뭐냐 하면 청년 중에서도 막 사회초년생들, 1인 가구, 막 사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주거안정을 좀 기해야겠다. 그러면 그 월세 살 돈으로 아예 사는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4억이 되고 비아파트가 된 거고요.

이거 한다고 아파트 못 사는 건 아니고 그거 하시려면 보금자리론 기존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청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 버리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 혜택이 큰데 그것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사더라도 그 혜택은 계속 다음번에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을 없애고 새로 대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거에 대해 3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그냥 말씀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머니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싫어하는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머니무브를 지금 굉장히 거칠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한 겁니다. 속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부 조정이 많은 거예요. 이것 정책하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변명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 진짜 부작용이 크게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금융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청년을 위한 대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융위에도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로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 여러 가지 제

도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것을 실제로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금융위에서,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조정훈 위원님 질의한 것도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그동안 보금자리론 아파트 대출 이런 것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낸 그런 제도가 마치 아파트는 하지 말고 다른 빌라나 이런 것을 하라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주택이나 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정말 필요하고 금융위에서도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대출 지원 이것도 금융위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이 신보나 기보 등에 출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보·기보에서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을 해 주고 쉽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민간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 많은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공헌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서 사회적 공헌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대출사업을 정말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도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민간은행과 함께 같이 민관 합동으로 지원을 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권익위원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이잖아요, 권익위가. 그런데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일단 그 공익신고가 법에 맞는 공익신고여야 되겠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희 위원** 보호 요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공익신고자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단은 법에 따른 절차와 또 법에 따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이고 공익신고자일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권익위원장일 때도 그렇고 이후에 의원 신분에서도 어떤 경우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느냐,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냐 할 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내란 사건 때, 내란 사태 때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국회를 통해서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와 또 국회의원에게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 문의했을 때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답변이 없었고 이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수사나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에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많은 실질적인 공익신고자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공익신고자로 형의 감면을 대부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고 공익신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현행법에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너무 간단하게 답하셨는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덕원 예,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아까 조 위원님도 그렇고 전 위원님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미래세대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달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자가 아니라 진짜 수요자 관점에서 해야 진짜 제대로 전달되고 효과도 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창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일자리 없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정부가 그것들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이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짚어야 될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정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금융을 좀 조이고 침체되면 다시

금융을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게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PF가 부실 위험이 커지거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그렇고 작년 2025년 말도 마찬가지로 공급 금융에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수요 금융 차원에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위험도를 낮췄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보면 그 부분이 큰 원칙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규제가 부동산 가격이나 공급정책을 조절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아야 된다, 지원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을 하지만. 그리고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고개를 끄덕임)

○한창민 위원 이번 대책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대책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들을 수요 금융하고 공급 금융으로 나눠서 보면 공급 부분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PF 자기자본 규제를 미루면서 공적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대출 부분에서는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신축 정비사업 관계 대출을 예외로 적용하는 이 부분도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것 아시지요? 이렇게 되면 자칫 정책금융이 다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하위 구조로 전락하고 가게부채 문제나 PF 부실 문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금융 같은 경우도,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규제 살짝 유예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도 주거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것도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딱 28년까지만 해서…… 그리고 공급이 중요한 부분……

○한창민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주거용 사업장이 사실은 70%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상화된 이 과정이 다시 부실로 갈 우려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먼저 공급 금융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짧으니까 수요 금융 측면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게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이 총량관리 실태를 4대 금융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대책을 마련한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저희가 지금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올 4월에 이 총량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1.5%로 설정했는데도 올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시중은행들 대출 목표

가 크게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한창민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4월에 발표를 하고 8월이면 올 말까지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벌써 총량관리 목표를 2배나 상향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청년 등 안정화를 위해서 총량을, 대출 절벽을 막는 것을 풀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써 그 원칙을 시중 은행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총량관리 목표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0% 이상이 돼요.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아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1.5%에서 3%로 늘릴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관리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패널티를 주고 관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그 총량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무리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너무 대출이 안 되고 잔금 같은 경우 지금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봤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저희들이 투기 수요 차단에는 핵심 원칙, LTV·DSR 그다음에 한도인 6억·4억·2억 이걸 그대로 가는 거고요.

상황이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경상성장률 자체가 1.5% 할 때는 4.9% 정도 됐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12%, 13%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거래량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해 봤더니 거래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결국은 실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한번 따져 봐서 그런 거지 무조건적으로 오면 다 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창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출 절벽의 문제 이것 때문에 늘리려고 한다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대출 절벽이 있을 정도로 총량규제에 대해서 은행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초과를 해 놓고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앞뒤가 바뀐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정확하게 관리정책에 따랐는지 확인한 다음에 패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변화에 맞게 총량을 좀 더 관리하는 걸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 놓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각 은행에 확보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확인됐는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

래야지 3%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자료도 좀 정리해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위원장 유동수**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오을 장관님, 최근에 한 연예인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하다가 친일과 후손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오는 12월에—16년 만이지요—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예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환수 이후에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 실적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조사위에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려서 보훈부가 받은 토지가 1600필지, 장부가액은 850억 원, 시가로는 한 1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훈부가 실제 매각을 통해서 완료한 금액은 897억 원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환수는 되었으나 정작 예우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친일재산들이 상당히, 잠겨 있는 친일재산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PPT 보시면 23년부터 3년간 친일 귀속재산 토지 매각대금 수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납률이 24년도에는 64.3%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내려가 가지고 40%대에 있습니다. 매년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올해만 해도 2만 1402명에게 929억 8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900억 원 이상의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기금 자체 수입이 매각 부진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 여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왜 이런 이유가, 매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잔여재산이 819필지에 한 192만 평 됩니다. 이 잔여 필

지를 보면 도로·하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매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찍이 매각된 토지들은 안전한 토지여서 매각이 쉽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한민수 위원** 저도 장관님하고 같은 자료를 보니까요. 보니까 친일 귀속재산 토지 상당수가 지자체나 군부대, 공용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입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입 요청 공문 이런 것만 보내실 게 아니고 직접 장관님이 뛰셔서 행안부나 국방부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각 절차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우리 보훈부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보니까 올 연말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거기에도 보훈부 인력이 파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출범 자체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앞서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친일로 이루어진 재산은 우리 정부가 조속 환수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4대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손자녀까지 그 환수된 친일재산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2기가 출범을 하면 더 환수를 해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예우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큰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동수**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마이크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민수 위원** 자리 배정을 한번씩 바꾸시지요.

○**위원장 유동수**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사실 오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문제를 여쭙보려고 하다가 일단 먼저 여쭙볼 게 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쭙습니다.

아까 세제개편안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 말씀하시면서 이주비 대출을 늘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130만 호라고 하는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모자라는 그 정도의 막대한 공급을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에 있어서 결국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이주비 대출이 너무 막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문제가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 일대는 사업성이 아무래도 강남보다 좀 낮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자체가 되게 많이 사업상 장애를 초래하긴 했던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트 재건축은 난망인 상황인 게 사실이라서 이 부분을 전혀 건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서서 금융위원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비 대출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종전자산으로 하다가 종후자산으로 LTV 기준을 늘린 것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 통상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종후자산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동호수 추첨이나 등등으로 해서 그 당시 주변 시세들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당시……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될지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준을 삼기 어려우니까 대출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금융권이나 건설사들이 알 만한 그 기준들을 금융위원회나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준 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바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 시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후자산 평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한 30% 정도가 추가로 종전보다 더 나간다고……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후자산을 기준으로 LTV의 산정기준을 삼았다는 것은 제가 좋다고 말씀은 이미 드렸습시다마는 그러면 종후자산 평가를 언제 시점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조합원 분양가로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하고 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액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정확한 시점 때문에, 시점이 안 나와서 좀 어렵다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봐 가지고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제 막 이주비 대출 관련된 걸 은행이랑 접촉하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아시게 되실 거니까요.

○김재섭 위원 특히 이주비 대출 문제는 잘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문제도 사실 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주비 할 때는. 특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약자분들도 많을 텐데 이 대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가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가액이 낮은 강

북 일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피해받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주비 대출만큼은 LTV 기준을 충분히 늘려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TV나 DSR이나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총량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뜻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난맥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LTV 기준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LTV 기준만큼은 크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여쭙보면,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은 지방 이전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찬성하시는 내용입니까, 그것?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런데 발표가 금방 날 것처럼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드시겠다는 위원장님의 다짐도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올해 처음으로 8위로 진입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 평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특히 지금 금융시장들이나 이런 것들의 안정이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함부로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은 저는 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를 해 주시고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거나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도 나온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금융위원장님, ETF 스트레스테스트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답변?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박대출 위원** 어떤 스트레스테스트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원래 의미는 스트레스테스트는 극단적인 거시경제 가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자본의 적정성이라든지 유동성……

○**박대출 위원** 아니, 어떤 걸 했냐고요, 설명을.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마 그때 의미는 영향분석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바꾼 건 도입 근거를 만든 겁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자꾸 꺾는데 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질문을 이어 가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그래서 기관별·단계별로……

○**박대출 위원** 단순 민감도분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나리오분석을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짚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기관별·단계별이라는 게……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시행령 도입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은……

○박대출 위원 아니, 영향분석을 했다는데 영향분석을 단순 영향분석을 했다는 겁니까, 복합 영향분석을 했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선정은 금감원에서 시행 세칙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를 많은 종목 중에서……

○박대출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박대출 위원 어떤 영향분석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대출 위원 예상치를 벗어난 결과입니까, 예상치대로 된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종목 선정은 시총 그다음에 거래량, 투자적격등급,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박대출 위원 예상치와 같다 예상치와 다르다, 어떤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다음에 운용사들은 상품 설계……

○박대출 위원 답변을 못 하시네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운용사들은 상품 설계를 하고……

○박대출 위원 내용도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영향분석이.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말씀드린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한 따져 볼 것들을 다 따져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느냐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전례 없이 급조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 도입 하는 과정에. 앞으로 그것 다 문제 될 겁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안은.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단순 민감도분석이나 복합 민감도분석이나에 대한 답변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어서 물어볼게요.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문제, 국무조정실장도 같이 들어 주실래요? 두 분한테 질문드릴게요.

아직 확정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중에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한 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융허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허브에 양극체제가 더 적합합니까, 다극체제가 적합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분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실래요?

국무조정실장님 먼저 하실래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금융허브 관련된 것은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박대출 위원 국무조정실은 여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저희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옆에 지금 금융위원장이 계시니까 직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관련된 부처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한 통합 조정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금융하고 관련된 거는 금융위원장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전체……

○박대출 위원 국무조정실장은 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정부 전체적인 거하고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입장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고 국무조정실장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아직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산업, 인프라, 제도, 구조……

○박대출 위원 금융위원장님, 양극체제가 적합하느냐. 금융허브를 하는데, 허브라는 게 뭘니까? 중심주의잖아요. 중심에 한 개가 있는 게 더 좋냐, 두 개 있는 게 좋냐, 10개 있는 게 좋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양극체제가 적합하냐, 서울·부산. 아니면 다극체제, 전주·나주,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까지 포함되는 다극체제가 적합하냐, 내가 질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입장이라도 얘기를 해 주 보세요, 답변을.

○금융위원장 이익원 전북 같은 경우도 새로 금융 중심지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금융위원장님, 금융공공기관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극체제보다는 양극체제가 더 적합하다 이런 답변도 하나 못 하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1분만 좀, 1분만.

○위원장 유동수 1분 드리십시오.

○송언석 위원 기왕이면 3분 쓰지.

○위원장 유동수 2분 드리십시오.

○송언석 위원 금융위원장이 오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TF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정무위 회의할 때 자료 요청을 했고 위원장이 테스트했다, 시장 영향 평가했다,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제출 못 하겠다라고 한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이게 단순인지 복합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위원장님, 스트레스 테스트했다는데 그 테스트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 고치는 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짚어볼 거 다 짚어본 건지 아니면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다 분석됐는지 자료만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는 있다 그러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은 안 하니까 이런 회의를 계속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지금 용어 봤는데……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 용어는 취지가 그러신 것 같고요, 영향 분석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엄밀한 의미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거시적으로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스트레스에 대한 전제조건을 두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가 스트레스 테스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위원장 유동수 그렇게까지 면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는 현재 없는데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데 분석적 자료로 영향 분석 자료 정도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를 들면 종목 같은 거 선정할 때 단일 레버리지를 어느 상품에 해야 될지. 당연히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런 것 같으면 금감원에서 시행세칙을 하면서 당연히 그런 걸 보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기관별·단계별로 본다는 게 당연히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은 뭐여야 될지.

○위원장 유동수 종목의 선택 기준 그리고 종목의 선택에 따른 영향 이런……

○박성훈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송언석 위원님이나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용어가 굉장히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자료가 있냐?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금융기관 위험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두고 그 스트레스에……

○송언석 위원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유동수 제가 끝난 후에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오는가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로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자료가 현재는 없지만 종목의 선정 과정이라든지 종목 선정

에 따른 레버리지의 200%로 할 때 영향 분석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은 관계 기관이 검토한 자료가…… 검토했고 그런 자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위원장 유동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그래서 저쪽에 질의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든지 시장 영향 평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을 때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는 3배인데 우리는 2배까지밖에 안 했다 정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것이 도입됐을 때 자본시장에 또는 자산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도입할 때는 그때 분명히 목적을 얘기했거든요, 환율 문제도 있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국내로 돌려 가지고 국내 증시에다 좀 투자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삼성을 할지 뭘 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일종목 ETF를 도입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다양한 변수를 바꿔가면서 검사를 해 본다, 그걸 정부에서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이게 도입할 때 제대로 검토가 잘 되어서 부작용도 최소화시키고 자본시장도 발전시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하나……

○**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주시겠다고……

○**위원장 유동수** 저한테 얘기하세요.

○**박성훈 위원** 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시다. 자료가 없는 거지요.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ETF를 신규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제로 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정책 효과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지, 판매나 운영하기 전에 시장 충격 상황에서 이 상품이 어떠한 효과들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에게 어떠한 자료도 넘어오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수** 아니, 제가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송언석 위원님이 정부에 계실 때는 제가 자료 요구하면 잘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후배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억원 위원장님, 지금 박성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분명히 그런 영향 분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환경적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 제출드렸는데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더 살펴보시지요.

○**송언석 위원** 자료 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정회했다가……

○**위원장 유동수** 간사님 두 분 남았습니다. 간사님 두 분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두 분 하실 동안…… 자료는 언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래 가지고 지나가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위원장 유동수** 아니,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박대출 위원** 이건 일회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 저희 이번 거제 폭우 피해에 많은 격려를,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면 왼쪽에 산사태가 나서 8월 17일 새벽 4시 40분경에 20대 청년이 자다가 그냥 매몰돼서 돌아가시고 또 부부 두 분이 바로 매몰됐다가 구조가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 옆의 화면을 보면 아파트 한 귀퉁이가 조금 크랙이 간 게 보일 겁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산에서 엄청나게 나무라든지 수목들이 그냥 토사물하고 같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수십 대 차량도 저렇게 매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산림청하고 지자체에서는 산사태가 아니고 아파트 대지 내니까 법면유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어요. 이 중차대한 일을 민간 전문가들이 정말 정밀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은데 거제 지역은 완전히 초비상이고 많은 자원봉사자, 군인, 시민들이 흙탕물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산림청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산사태가 내 책임이 아니다, 아파트 법면유실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물론 세밀하게 따져 봐야겠지만 지금 사진만으로 놓고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한번 넘겨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 왼쪽에 산림청이 산사태 사전 조사를 진행한 지역입니다. 보면 점선이 있는 데가 아마, 점선 밑에나 점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숲입니다. 숲인데 구체적으로 점선을 표시를 한 건데요. 오른쪽에 빨간 부분에 있는 지역이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이미 산림청에서 용역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만약에 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법면이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한테 아파트 측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이건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산림청에서 언제 발표했냐,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날 했습니다. 17일 날 산사태가 나고 18일도 거제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서는 이 책임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아파트 자체 문제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행정의 지금 현실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지역민들 관점에서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산림청하고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보세요.

그다음 화면 좀 더 키워 보세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내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낸 건데요 21일입니다. 한참 구슬땀을 흘리고 북구하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 해당 아파트에다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할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저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두 분도 입원해 있으면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 부부인데요 아내분이 거제에 있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수술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전원을 해 달 라는데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시켜 달라. 어떻게 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 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역민들 관점에서 억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은 아무리 그 법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번 에 폭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피해자 내지는 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위원장 유동수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김현정 위원이 코스닥 기업 퇴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코스닥이 정상 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은 정책도 다 시기와 타이밍 이 있는데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화된 상태로, 특정 종목 한쪽으로 몰 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그런 점들이 우려가 있고.

또 최근에 저를 찾아온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런 데서 걱정을 하시는 게, 코 스닥이 하나의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업 의욕 상실 또는 IPO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기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책 결정들을 더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점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훈부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보훈부 심사와 관련되어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훈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정처 자료 검토가 있고 심사를 보니까 우리가 보훈부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법정 의무지출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다년간 진행되는 시설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법정 의무지출과 관련되어서는 과소 추계를 하고 또 추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전용 또는 추경 등을 했다가 나중에는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부담을 민간이나 다른 산하기관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쭉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을 보내 드렸을 테니까 아실 것 같고요.

또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서 착공·계약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연장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제대군인 의료 지원, 시내버스 비용 관련된 것들 또는 현충시설 독립의 전당 관련된 것, 대구보훈병원 시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분류에 의해서 예산이 과소 추계돼 가지고 나중에는 민간에 전가되는 사안들 또는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사전 미흡으로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예정처 자료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실제로 보훈부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설계 수정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계치를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1000억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해마다 추경에서 1000억 보전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늘 1000억이 부족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7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1000억을 전부 다 태워서 더 이상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정치를, 추계치를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를 들면 같은 진료비인데요 보훈병원은 3년 평균 증감률을 하고 위탁병원은 5년 치 평균을 씁니다. 즉 부처 내에서 통일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구보훈병원 사

레인데 국토부 지침보다 짧게 계상했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지적받으니까 또 늘려 잡았다가, 계속 내부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통일적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의 지침들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는 뭐냐 하면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독립된 원칙들 그다음에 국회가 정한 예산심사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훈부가 부의 위상에 맞는 예산 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내일 결산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잘 따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예산안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다시 한번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하여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오늘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질의 과정 중에 보훈병원 관련 예산은 관례대로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5년간 보훈병원 관련 예산이 추경 때 얼마씩 확보가 됐는지 그 자료를 오늘 회의 종료 시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참고로 보훈 관련 병원 신축비가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위원장 유동수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추가질의는 5분간으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촉박하면 제가 일이 분 정도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금융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난 몇 개의 사건이 있었지요. 페버스 그리고 고시원의 옥조, 이번에는 빗내서 빌라 사라는 8·13 부동산 종합대책, 일명 청년 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세사기 불길도 꺼지지 않은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미는 대출정책,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거 헛발질 3연타로 인해서 전 세대를 통틀어서 2030세대가 가장 이재명 정부의 부정평가가 많은 세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대한민국의 동등한 경제 주체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에게만 더 작은, 더 싼 집 그리고 비아파트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청년 보금자리론을 보게 되면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입니다, LTV를 최대 80% 그리고 연 3% 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빌라에서 살고 싶을까요? 자산가치가 불투명한 매물을 빗내서 받아 주게 만드는, 말 그대로 매수 떠넘기기 정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청년에게 LTV 80%까지 허용해서 빌라나 비아파트를 매입한 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그리고 거래가 막히면 그 손실은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은 세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수요와 정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들은 한 80%가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비아파트는 환금성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때 처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세 파악도 어렵습니다. 자산 증식 효과도 거의 없고요. 과연 청년들이 매입가격에 산 빌라나 비아파트를 되팔 수 있을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정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지, 가격 설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가 4억 원 이하라고 하는 그 기준선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한번 PPT 자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전체 빌라 매매가 중 평균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자치구, 아홉 곳에 불과합니다. 30% 수준이고요. 서울 빌라 열 곳 중 여섯 곳은 아예 대출 자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60~85㎡입니다. 약 18평 규모 오피스텔 평균가가 7억 4980만 원입니다. 정부 대출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4억 원 이하 매물은 대부분 초 소형 원룸에 불과한, 과연 신혼부부가 이런 데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4억 원 기준을 예산에 맞춰 정부가 임의로 정해 놓고 청년들로 하여금 예산에 끼워 맞춰서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어떻게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일자리에 근접한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주택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비아파트에만 평생 살라고 하는 그런 정책, 과연 이것이 청년을 위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고 공감할 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청년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가격

이하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기준 및 대출한도,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 맞춰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제가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여쭙았는데 어떤 청년들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그러고 어떤 청년들은 육조 달린 고시원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산공원에 짓게 되는 그 임대아파트, 청년들 거기에다 살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용산의 임대주택에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편 가르기를 청년들에게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어떤 청년은 특혜받은 청년입니까? 그 로또에서 떨어진 청년들은 폐버스에서 살아야 되고 육조가 있는 고시원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비열한, 저급한 청년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재명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아마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도 보금자리론이라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조 원이 청년들 거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사회초년생, 막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직장 다니는 걸 해서 월세를 한 80만 원, 85만 원 내는데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주거안정. 그럴 바에는 내가 월세 내는 돈으로 사겠다, 살 수 있다 그 선택지를 하나 준 거고요. 이게 이걸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비어 있는 이런 쪽을 또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집을 사 버리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결국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거든요. 이걸 좀 아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달랑 그 집을 사 가지고 이 혜택이 없어지면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걸 사더라도 그 혜택은 안 쓴 것으로 계속 유지된다, 다음번에 쓸 수 있다 이걸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왜 4억이나, 이런 걸 보면 청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월세 부담을 내는 게 80만 원, 85만 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은 그걸 더 높여 놓으면 160만 원을 내야 되고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초년생들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사회초년생 거기에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선택지를 하나 더 줬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을 하나 더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더 추가로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훈 위원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을 외곽에만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아니, 일부러 외곽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에 지금도…… 저희들이 이것을 왜 그러냐면 물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청년들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다양한 처지잖아요, 다양한 주거 상황이고. 그런데 역세권에 직장 가는 그런 부분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월세가 올라가는 불안한 부분들을 주거안정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막아 놓고 이쪽으로 억지로 보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런 데 저희들이 선택지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저는 일단 박성훈 위원님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열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절박함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정부 대책과 의지를 조금 더 국민들이나 특히 청년들께 잘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저희 공공택지나 아니면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공공도심복합사업,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잘 알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반성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번에 결혼 패널티라고 불리던 것들을 많이 저희가 없앴거든요. 그래서 온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산하고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족도 높은 공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빈 공간을 모두가 나서 가지고 이것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더 고민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더 고민해야 되고 LH도 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한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의 검토보고서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네이밍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 네이밍을 만드는 게 정책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국민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금자리론에 청년주택을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상품을 더 만들었다, 이렇게 포섭하는 게 의

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상품을 만드는데 저희도 정무위에 오래 있었지만 이것 계좌 폐쇄하고 새로운 계좌 만들고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상품 내에 만들어져도 그 상품 안에 이렇게 포섭시키면 그 상품에 계속해서 국민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터 먼저 좀 얘기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부터 먼저 하고 자료를 다음에 얘기할까요?

○위원장 유동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업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송언석 위원 ISP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1억 2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를 통합 수집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시스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 클라우드하고 민간 클라우드에 있어서 보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가 안 돼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클라우드하고 민간 클라우드 간에……

○송언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부 수집할 권한이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축비를 이미 6억인가 6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계약을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법부터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SP를 1억 2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제대로 된 ISP가 아니었다, 용역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25년 3월 24일 날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6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7월 30일 날 개인정보위에서 유권해석 요청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클라우드를 그냥 쓰면 안 되니까 민간 클라우드를 구입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는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먼저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고 난 뒤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 날 다른 예산에 있는 사업들을 전용해 가지고 돈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에요.

예산에 정통하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님, 국고금 관리법의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

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송언석 위원 아마 조문이 몇 조인지는 몰라도 이 내용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이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예산실에서 각 부처에 배정을 해 주고 난 뒤에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전산장비에 제로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지금 1억 2300만 원을 당겨왔어요.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금, 소비자 관련 법률 교육 콘텐츠 제작,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등 이런 사업에서 당겨 왔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맞고요.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3조에서……

○송언석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개정은커녕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재무관과 지출관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글썽요, 위법성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질문을 안 했는데 왜 답변부터 하려 그래요.

○위원장 유동수 질의 마치고 답변해 주세요, 공정위원장님.

○송언석 위원 나도 질의 좀 할게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죄송합니다.

○송언석 위원 잘못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똑딱똑딱 해서 플랫폼 관련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접근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돼 있고 단순히 사업자 정보하고 시장 정보 제공하는 것만 2025년 12월 30일 시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축률 자체도 오픈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비자 가입정보, 납입금액, 납입내역 조회, 사망자 가입정보 조회, 피해구제 보상 신청, 관리감독 기능 이런 것은 아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담당자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ISP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 자체가 지금 제도개선을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급한 제도개선의 어떤 필요성이 커서 좀 무

리하게 진행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개선은 뭘 어떻게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니, 잘 아시겠지만……

○송언석 위원 이거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용역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려 47억 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구축비 있잖아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 예산을 다시 국정자원 관리원인가 정확한 이름은 뭘지 모르겠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쪽에다가 4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이견 일사불로 안 되겠다, 임차로 해라, 10년간 임차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렁 계약부터 시작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내일 법안소위에서 좀 소명 드리겠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유동수 결산소위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소명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한 1분, 일단.

○송언석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예, 2분 드렸습니다.

○송언석 위원 금융위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 의원실에다 자료를 제출한 것은 언제였나 하면 24년 1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만든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이라는 책자를 저희들한테 보내 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3페이지짜리 자료를 보내 왔는데 붙임 1,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1번이 뭐냐 하면 코스피200 및 레버리지 지수 해 가지고 2010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코스피200과 코스피200 레버리지를 비교해서 변동성 때문에 위험이 크다,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료로 해서 제출했다, 모든 걸 다 검토했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환율 문제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해외에서 투자하는 걸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걸 받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이걸 해라’ 그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관련 자료도 없고 실무자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 왔는데 왔다는 자료는 그 사항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저도……

○송언석 위원 10초 남았기 때문에 10초 동안 더…… 위원장님,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유동수 제가 말할 10초를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드릴게요.

○박성훈 위원 저도 자료와 관련해서 1분만……

○위원장 유동수 제가 좀 말씀드리고.

금융위에 저 자료가 전부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위원장 유동수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 결산심의가 있고 모레 상임위가 예정돼 있으니까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받은 자료가 2024년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이라는 이 자료인데요. 제가 아는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별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량적 손실을 나타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밸류 앳 리스크(Value at Risk), 흔히 저희가 VaR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과연 이게 1일 VaR이 얼마인지 그리고 익스페티드 쇼트폴(Expected Shortfall)이라고 흔히 금융권에서 이야기하지요, 기대손실. 그러니까 VaR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평균 손실액 이런 게 없는 게 어떻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까?

저는 이 정량적인 시나리오 분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별, 상황별 결과 수치도 제공하지 않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과연 금융위원장님이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라고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목도 없고 이게 뭐니까? 아니,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라고 해서 보내신 게…… 우리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국회에 이렇게 일을 합니까?

보고서가 있으면 제목도 있고 언제 실시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압니까? 이것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고 지금…… 그냥 아예 없다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세요. 서로 간에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을 만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기재부 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이것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고서의 양식이 맞습니까? 기재부 공무원들 그냥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컴퓨터를 쳐 가지고 아무 거나 갖다 붙여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정무위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무슨 초등학교 학예회합니까? 도대체 이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전부 다 바보입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없으면 없다, 그 없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따져 보면 되는 거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정무위 와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옳든 그르든 치열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슈인데 아마 금융위원회에 어 관심 가졌을 거예요,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개인별 가계대출 총량으로 하지 않고 좀 열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남은 이슈가 그러면 대출금액을 분양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로 할 건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분양가의 60%로 하든지 감정가의 50%로 하든지 해서 더 낮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와 지금 시세가 별 차이가 없는 아파트는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강남권 아파트들은 시세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분양받을 때 그 가격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시세가 이 정도 되면…… 이게 잔금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요인은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입주할 분들의 편의를 좀 봐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꼭 분양가로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금융위원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론이 나신 게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금융위원장 이익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그런 잔금대출이라든지 실수요 이런 부분의 애로를 풀어 준다고 그래서 총량 같은 경우……

○**신동욱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LTV 규제 도입 취지 자체는 금융회사가 담보가치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한을 걸어 놓은 거고요.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오류 년 걸린다고 보면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금액도 디에이치 방배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로 하면 13억 2000만 원이 대출 한도인데 감정가의 50%는 20억 원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권이 회수를 못 하거나 이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기준은 그러면 계속 분양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도 혹시 연구 중이신지?

○**금융위원장 이억원** 당국의 역할이 있고요. 또 은행의 역할이 있는데 당국은 상한을 시세로 해서 해 놓은 거고요. 금융기관들이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고 말씀하신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그렇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은행들이 알아서 감정가로, 시세로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까, 은행들이 하겠다면?

○**금융위원장 이억원** 은행들이 아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분양가로 할 건지 감정가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건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신동욱 위원**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아까 제가 너무 화내느라고 말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신동욱 위원** 채이배 실장님 오늘 오신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여쭙볼게요.

얼마 전에, 그제께인가요? 총리가 구청장들 모아 놓고……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신동욱 위원** 이쪽으로 나오셔서……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시간 멈춰 주시고 다시 1분 드리세요.

○**신동욱 위원** 구청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택공급이 줄었고 그래서 500가구 이하 재건축은 구청장들에게 인허가권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서울시가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서 구청들이 하고 싶었는데도 못 했더라는 무슨 실증적 자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제가 알기로는 그날 구청장님 스물한 분이 오셨는데요. 스물다섯 분의 의견이 모두 다 구청장에게 권한을 좀 더 주면 보다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에게 권한을, 서울시장에 있던 권한을 나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주택공급이라는 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이 맞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계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굳이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을 불러 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아서 너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 이것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 총리가 구청장들을 모아서 당신네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주택공급 좀 해 주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그만큼 이례적으로 지금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거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보는 것은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해 가지고 집을 못 지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정부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허가를 안 내줘서 주택공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고 구청장들 불러 가지고 ‘너희들 애로를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해 주면 빨리빨리 할 텐데 서울시에서 발목 잡아서 못 합니다’ 이런 식의 일종의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어디, 어떤 아파트의 재건축 허가를 붙잡고 있어서 건축을 못 했는지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낼 수 있냐는 거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위원님, 그게 말씀대로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저희가 실증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그냥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논의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구청장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그냥 나온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장들이야 자기한테 인허가권이 주어지면 좋은 것인데……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예, 그러니까요.

○신동욱 위원 그런 구청장들의 당연한 심리를 이용해서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고 총리가 서울시 21개 구청장을 불러서 서울시가 발목 잡아 가지고 재건축 못 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채이배 아무튼 정부는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1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1분 드리세요.

○**조정훈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 몇 가지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주신 거 감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문서가 박성훈 위원님과 논의하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발언의 본질인지 그리고 더 이상의 자료가 없으신지와 두 번째,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유동수 위원장님 통해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제가……

○**조정훈 위원** 예,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이덕원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이덕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 근거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면 갈수록, 종목 선정하고 그다음 단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설계하면 증권신고서 내면 투자자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별로, 단계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별로 짚어야 될 걸 짚었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단계별로 짚어야 될 것들을 짚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신동욱 위원** 이게 뭘 짚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짚었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언제 만드셨냐고요, 이 문서를? 설마 어제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어제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문서……

○**박상혁 위원** 이것 질의하고 섞여 있어서……

○**위원장 유동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님, 작성 날짜가 언제인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제출해 주신 그 자료의 문서 작성 일자를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융위원장 이덕원**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아까 우리가 논의하는 중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자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상 없었고 단계별로 그 리스크들을 충분히 잘 검토했고 그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렇게 검토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고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한겨레 2026년 1월 16일 단독 인터뷰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 가능한 걸 국내에서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기사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관련 검토 지시한 것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허위 기사입니까?

○**금융위원장 이덕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관들에서……

○**조정훈 위원** 아니, 그냥 오엑스로 얘기해 주세요. 검토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덕원** 지시가 됐든 뭐가 됐든 제언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언이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좀 약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한겨레가 잘못됐는지 김용범 실장이 잘못됐는지, 저 이것 끝까지 갈 거예요. 사실을 말씀해 달라고요. 연락을 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원회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 직접 하셨습니까, 위원장에, 아니면 정책실 누가 금융위 누구에게 했습니까? 직접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것은 직접 봤고 그게 아니라 관계 기관들 사이에는 결국은 어떤 의견이나 제언을 위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정훈 위원**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김용범 실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한 건 아니란 말씀입니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인터뷰에. 그러니까 이억원 위원장이 직접 받으셨냐고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받지 않았습시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금융위 누가 받았습니까? 여기 금융위 누구 나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조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누가 받고가 아니라……

○**조정훈 위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걸 분명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셨고, 관련 검토 지시한 부서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서류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이게 1월 13일이고요. ‘그날 김용범 실장은 금융회사들을 다 불러 놓고, 삼성증권, 한투, 미래에셋 다 불러 놓고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거 하고 금융위에 관련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 날 금융위에서 수정의결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고 안건 심의 대화록 또는 녹취록을 요약해서 보내 주셨으니까 이걸 사실관계 맞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1월 28일 그 자료가 아까 원하셨던 그 자료 맞습니다. 1월 28일 자료 보시면……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수정의결하는 그날 위원님 중에 한 분, 이름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그들조차도 전문 투자자가 들어오기를 권고한다. 심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면 최대 손실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개별 레버리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쪽쪽쪽쪽 굉장히 자세하게 걱정해 대한 내용을 여기 씁니다.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 레버리지를 할지 안 할지 참고했던 자료를 다 달라고 했더니 4개를 주셨어요. 그중의 하나는 아주 온건하게 하자라고 나오고 나머지 3개는 굉장히 강하게, 특히 ‘2024년 미국 SEC 투자자문위원회에서 ETF 규제 강화를 해서 이름을 절대로 ETF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혼동할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 아주 구구절절이 쓰여 있습니다. 발표한 이후 발생한 많은 부작용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전문가들이, 금융위원들이, 다 면면들이 한국은행에서

도 들어오고 기재부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한 번에 통과가 될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가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찍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님, 4월 15일 날 이게 발표되고 아주 공교롭게 6월 3일 우리는 지방선거라는 걸 합니다. 이 두 개의 개연성을 걱정하는 정치인은 저 하나밖에 없을까요? 우리 국민들, 저 하나일까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단순하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손실액이 얼마인지 지난주 전체회의 때 유동수 위원장님이 표까지, 수십조 원 개미들이 묶여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저는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제가 계속 질문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주장자가 금융위원회는 아니고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검토 제의—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받은 거 맞으신 거지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이억원 위원장한테 직접 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위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조정훈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이억원 위원장과 김용범 실장님이 소통하신 첫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책 형성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거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 시장연구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없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혁신을 막는 ETF 후진국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다 이해가 되니까요. 언론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소위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라는 사람이, 이억원 위원장과 김용범 실장 같은 분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처음 언급한 건 이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그전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구소 보고서, 언론 등등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집권 여당에 말하면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급에 있는 사람 중에 처음 언급은 1월 16일 인터뷰, 그리고 이 인터뷰에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에 요구를 하셨다, 이걸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은 아니시라는 거고, 지금?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렇게 일 대 일로 몰아가시지 마시고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정훈 위원**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국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조정훈 위원**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로 말하면서, 이따위 문서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엔 넘어가 드리는데 진짜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믿으라고요?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제가 탄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김용범 실장이 이억원 위원장한테 직접 지시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직접 아니면 관계 당국자로부터 국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정책실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검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기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런 것도 사실 확인을 해 주고 그래서 이 정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밝히는 게 국회 정무위의 책임이에요. 이걸 정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 시장연구기관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홍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미 25년 5월에 출시가 되고, 25년 10월에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편하게 계속해서 하면서 규모도 계속 커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당시에 외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면 외화자금 유출 같은 걸 방지하면서 불러들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위원 지적처럼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 위주로 한다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편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하면서, 상품 출시하면서 5월 24일부터 뭘 했냐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아니, 그래서 이억원 위원장님이 제안한 거예요, 이것를?

○**금융위원장 이억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걸어 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1000만 원 없이도 가셨던 분들이 이젠 해외 갈 때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상한을 설정해 났고요. 그다음에 심화 교육도 안 받고 갔던 것도 심화 교육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자 보호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 같은 건 해 났고, 음의 복리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괴리율의 함정, 숙련된 투자자한테만 적합한 상품, 계속 여러 번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자 유의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조정훈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 주세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게 1월 28일 금융위원회에 보고안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건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안건 할 때는 관계 부처 간에, 서로 간에 논의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도입을 추진해 보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그 근거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그다음에 상품 운영은 어떻게 할지 금감원 단위에서 시행 세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래소는 상장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운용사들은 상품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증권심사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또 상장 심사를 하고 그 결과로써 마지막에 상품이 출시된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계 단계별로 기관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냥 계속해서 짚어볼 건 짚어 봤다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따 재보충할 테지만……

○**위원장 유동수** 좀 정리……

○조정훈 위원 금융위원회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 금융위원장님 아까 첫 질의에서 저희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원칙은 훼손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좀 완화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근거들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경제성장률이 4.9%에서, 10%에서 13% 정도로 올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 하는데 지금 원칙이 경제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가계대출의 총량을 변화시킨다는 게 원칙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경제성장률이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오르거나 그 변화의 추이가 다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상황 여력을 보고 하는 판단 기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큰 원칙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동산대책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실제로 올 8월까지 4월에 총량 규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8월까지인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중에 4대 은행은 벌써 총량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검토가 돼 가지고 자료로 축적이 돼서 1.5에서 3%까지 늘어나는 근거 자료로 확실히 축적이 돼 있으면 그것을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을 좀 나눠 가지고 각 은행별로 정리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 스트레스 테스트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 정책이 빠르게 집행되는 가운데서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 기조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페널티 얘기까지도 제가 했듯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 이주비나 실제로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해서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일부 사업 진행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해당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편의로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칙 없이, 아니면 기존의 정확한 통계나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또다시 굉장히 높은 가계부채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가계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이걸 별도 관리라고 써 놔는데 그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별도 관리라고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보면 1.5에서 3, 이 총량 관리 전체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그것은 별도로 총량 대출의 비율을 한다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익원**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그 3%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는 좀 구분돼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대책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첫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PF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이 부분을 신용보증이나 아니면 대출 차입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자금 경색 때문에 부실이 계속 확대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안을 냈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 자본 늘리고 사업평가를 강화해서 일정 부분, 여기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 보면 올 상반기까지 한 61조 정도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좀 개선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2023년 말부터 올해까지 관련해 가지고 정상화시켰던 것들을 항목별로, 이전에 한 번 나왔는데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지 정말로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늘리는 부분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1분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재보충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주금공의 운용배수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보완하겠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주금공을 통해 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그것을 보증 비율을 높여 가지고 이걸 보장해 주는 식으로 사적인 책임이 공적인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도 정확한 검토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24년 말에, 제 기억으로는 한 230조 정도 났다가 지금 한 170조로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좀 촉진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있는 사업장들에서 더 속도가 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는 거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갑자기 또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런 점은 명심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창민 위원** 아마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게 정확하게 구분된 자료를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필요한 사업장,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공급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정리가 돼 있는지, 그런 사업장이 이번에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돼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동수**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억원 위원장님 상대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3일 날 국무회의에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은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고 정리하자’. 위원장님, 이것 기억하시지요, 대통령님 말씀?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민수 위원** 제가 뭘 질의할지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청년미래적금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도약계좌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3년 만기로 기간 줄이고 혜택을 보완한 단기집중형 상품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6월 22일부터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최종 집계 결과를 보니까 최종 가입자가 138만 5000명, 목표치 320만 명 대비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 사업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23년 6월에 출시돼 가지고 지난해 12월까지 신규 가입을 운영한 청년도약계좌 이게 결산 때마다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 전반기 정무위에서도. 그런데도 매년 편성된 출연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됐고 집행되지 못한 잔액은 유보·이월되는 방식을 되풀이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민수 위원** 특히 가입 실적 추세로 연내 기여금 지급소요가 사실상 확정되는 연말 시점에도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출연금 잔액을 전부 교부하는 방식이 이 또한 반복돼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정된 재정이 출연기관에 그대로 잠기는 것이잖아요. 예산 낭비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뀌었는데 목표치는 320만 명으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최종 개설률은 46%였고요. 이것 참고를 하셨습니까, 목표치 세울 때?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목표를 달성이 안 되면 수정한다든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한다는 게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한민수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신청자 234만 3000명 중에 41%에 달하는 95만 8000명이 심사와 개설 과정에서 탈락하고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한 청년이 37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가구원 동의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서류를 내지 못하고 탈락한 청년이 40만 9000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득 미달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금융위나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못 했다는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 있는 청년이라면 행정적 문턱 때문에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번 1차 모집 사실 자체를 미처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추가 가입 문의가 끝난 다음에 8300건이 넘었어요. 그만큼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홍보 채널이 안 돼 가지고 신청 마감이 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구원 동의 절차를 비롯한 신청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고지를 좀 해 주십시오. 계좌 개설 유예기간도 좀 늘려 주시고. 그래서 서류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청년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 통과 이후에도 리마인드 알람 등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설기한을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낮지만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그때를 같이 비교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138만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234만 중에 154만이 거기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가구원 미동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하게 청년들이 와서 그냥 거기서 클릭을 해서,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본인 동의 몇 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구원 소득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구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

서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암만해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가구원의 동의를 받는, 그러면 그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소득을 받아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2차로 또 모집을 할 때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수 위원 가구원 동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세심하게.

그런데 320만 명 예상해 놓고 138만 5000명이니까 많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목표치를 낮추시든지, 차라리.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한민수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유동수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 질의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8월 10일 날 보니까 청년미래적금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아주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 없습니다.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가입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이것 뭐 무책임, 무능도 모자라 가지고 이런 눈속임까지 하고요. 진짜 여기에 보니까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해 났는데 정말 대체 불가 금융위 같아요.

아니, 지금 한민수 위원 지적하셨잖아요. 320만 명 하겠다고 예산 7367억 편성했지요. 320에 하고 지금 138, 50%도 안 돼요. 절반도 못 되는데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도 지금 미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당할 게 아니지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는데 이것 한 번 더 여쭙볼게요. 이 석 장짜리 이 자료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이 석 장짜리 영향분석 자료가 이게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로, 단계별로……

○박대출 위원 더 있습니까, 다입니까, 이게? 이게 전부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더 있으면 더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질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더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더 있는 것은 내용은 못 내고 이 석 장짜리 이것은 영향분석 아니에요, 단순 민감도분석이지.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 기준을 초기 순자산규모 100으로 해 놓고 기초지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101 되고 99 되고 두 배 되면 100이 200이 되고 198 되고, 세 배 되면 303 되고 297 되고. 이런 지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위험성 및 영향자료라고 내놓고, 시가총액 거래대금 파생상품의 안전성 관련 종목 통계 해 놓고 거래대금 비중 종목별로 쭉 그것만 나열해 놓고.

세 번째,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성과 요인 분석해 놓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 및 시사점, 하나 마나 한 소리. ‘투자자의 선부른 시장 예측과 잦은 거래가 수익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불필요한 잦은 매매를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LETF는 변동성에 취약하며 장기보유 시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함’. 이게 영향분석 자료라고 주는 겁니까? 거기다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지하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국장에 막 끼어들기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삼전닉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까지 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표본 데이터까지 엉터리예요. 표본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 2월 해서 레버리지 지수 이것 비교한 게 2024년 8월 기준, 종목 통계는 2020년 3월 해 가지고 거래대금하고 비중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자료. 그다음에 투자 성과 요인 분석이 2024년 1월 자료예요. 2024년 1월은 뭐예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의 시가총액 비중이 22.6%일 때예요, 이때 기준이. 올해 ETF 출시한 5월에 60%입니다, 이 두 업종이. 데이터 표본도 완전히 오류예요. 22%짜리 자료를 내놓고 60%짜리를 분석했다고, 세 배가 되는 것을? 분석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런 자료를 내놓고…… 추가로 더 있다고 그러시니까 더 있는 것도 제출을 하세요. 그것을 보고 내용을 분석할 겁니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원인을 앞으로 계속 밝혀낼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국회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셔서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금융위원장 이덕원** 아까 말씀드린 그 표는 아마 그 익스포저 리밸런싱 규모에 차이가 얼마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거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박대출 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영향분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분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금융위원장 이덕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두 배로 가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얼마 나오는지 그다음에 음의 복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고 위원님께서……

○**박대출 위원** 복리도 아니예요. 복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래 놓고 1 빼고 더하고 더하고……

○**금융위원장 이덕원** 두 배 보시면 목표 익스포저 그다음에 리밸런싱 규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특이점이 있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원하시

는 것은 아까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대출 위원 아니,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영향분석이 되려면 복합 변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료가 있냐고, 그렇게 또 실제로 했냐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너무 많아요. 전례 없이 병행심사했잖아요. 금감원이 전례 없이 한 거예요, 병행심사를.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하고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예비심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투자운용사랑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지금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이게 청와대에서 드라이브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따라가다가 지금 사고 친 거예요.

○위원장 유동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유동수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원래 오늘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내일 결산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결산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묻는 건데 관행적으로 지금과 같이 단일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는 무관한 것들을 계속 시간을 주시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2년간 정무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회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는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정훈 위원님께서 특별히 2분간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 한겨레 기사 이후에 뉴스핌에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논의된 종목 레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기사의 톤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산운용사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목표가 주가, 주식시장 부양이라기보다는 ‘1470원대로 급등한 환율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서학개미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단일 종목 ETF를 도입하실 때 환율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은 그때 얘기한 게 비대칭 규제 해소 이것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서 몇 달 만에 지금 어느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네요. 지금 환율이 내려갔지만 그게 설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내려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홍콩 상품 같은 경우……

○**조정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금융위원장 이억원**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제가 계속 이것을 추적하는 것은 이것을 도입하겠다 하는 분들의 정책적 의도, 정책 책임자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정책을 검토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인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고려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다 따져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한 수십 개 따져 보고 왔는데 1월 28일에 보고안건 심의, 상정해서 4월 며칠입니까, 4월 중순·하순에 이것 의결하셨고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라는 것 고려해서 너무 서둘러서 한 거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항하셨다가 두세 달만 전문위원들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반투자자가 아닌 헤지펀드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달은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한번 크게 홍역 이상의 것을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겠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직접 소통을 안 했다고 하시니 실무단에서 누가 소통했는지 계속 제가 질의할 거고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먼저 서일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회의 끝나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한 이유는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21년도 우리 진료비 부족액은 250억, 23년도에는 470억, 24년도에는 920억, 25년도에는 840억입니다. 이 중에 제가 관례적으로 해마다 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한 것은 25년 1년밖에 없습니다. 844억 추경을 했고요. 그전에는 다른 예산에서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소위원장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모레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준현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박대출 박민규 박상혁 박성훈 박준태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유동수 이강일 전현희 조정훈 한민수 한창민

○출장 위원(3인)

이해민 최기상 최은석

○청가 위원(1인)

민병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국무2차장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남동우
총무기획관 이상로
규제총괄정책관 김진곤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채이배
정무실장 서은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
사무총장 장영현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보훈문화정책실장 나치만
보상정책국장 용교순
보훈의료복지국장 육현수
보훈단체협력관 홍경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찬호
독립기념관
관장 김희곤
88관광개발(주)
사장 서정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사무처장 신동열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정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부패방지국장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고충처리국장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유현숙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준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사무처장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상민
 조사조정국장 이재형
 예방조정심의관 고낙준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 신민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박서홍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심사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2026. 8. 24
	.	강준현		
청원심사	강준현	.		
	.	최기상		

○의안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7.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1)

이상 4건 7월 6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4)

7월 8일 회부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4)

이상 3건 7월 9일 회부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2)

이상 3건 7월 10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5)

이상 2건 7월 14일 회부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1)

이상 2건 7월 21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1.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8)

7월 22일 회부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8)

7월 23일 회부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27)

이상 3건 7월 24일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0)

이상 3건 7월 27일 회부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7.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3)

이상 4건 7월 28일 회부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9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9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8.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6)

이상 4건 7월 29일 회부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8)

8월 3일 회부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6)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9)

이상 4건 8월 6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5)

8월 10일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2)

이상 3건 8월 12일 회부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8)

이상 2건 8월 13일 회부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0)

이상 2건 8월 14일 회부됨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 8. 1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9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99)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이상 6건 8월 18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3)

8월 19일 회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이상 2건 8월 20일 회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5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0.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이상 3건 8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6.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4)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26. 7.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1)

7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5)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6. 10.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7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6.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9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1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6.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11)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2026. 6. 25.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6. 30.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4)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16.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0.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6)

이상 11건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교통기본법안

(2026. 7. 2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2)

7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0)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4)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이상 5건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3)

8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

(2026. 7. 30. 정상현 외 50,8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4)

7월 31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입법예고	대통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국가보훈부	7	1	-	6	4	2	1
국무조정실	-	1	-	-	5	-	-
공정거래위원회	3	3	1	-	2	5	-
금융위원회	-	3	1	-	1	6	-
국민권익위원회	4	-	-	-	6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1	-	-